

제 583 호
1976.12.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 - 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77 호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	3
제 1078 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생산비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3

◎ 규 칙

제 1619 호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3
----------	---	---

◎ 고 시

제 3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4
제 35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4
제 354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5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127

제 355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6
제 35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	7
제 357 호	1977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예산고시...	8
◎ 공 고		
제 323 호	KS 표시 정지처분.....	9
제 324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인가공고.....	9
제 325 호	영등재 2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	10
◎ 사 령	11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12. 29

◎ 서울특별시조례제 1077 호

서울특별시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
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12. 29

◎ 서울특별시조례제 1078 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
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6. 12. 29

◎ 서울특별시규칙제 1619 호

서울특별시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전화개발기금설치 및 관
리조례시행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재경비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 지
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
한 규정제 2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6.12.2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재경비 번호	구분	등급	유발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용산 18	폐지	소로	3	6	75	혜화동 13-2	혜화동 5-163	
용산 19	"	"	3	4	10	창신동 140-4	창신동 140-3	
동대문 7	기정	"	3	6	100	제기동 1148-2	제기동 1149-3	
"	변경	"	3	6	100	"	"	위치변경
용산 4	폐지	"	3	4	80	이태원 224-46	이태원 223-1	

첨: 도면표시와 갈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198 호(71.4.7) 에
의거 신설되고 건설부고시제 109호

(76.7.19)에 의거 재결정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
획법제 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2. 29.
서울특별시장

○ 지적승인 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중로	2	101	15m	910 m	서초동산 70-1	방배동산 83-2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 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2. 30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일부변경하 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 조 및 동법제 13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 조에 의거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설	학 교 (상명여자사범대학)	중로구 홍지동 1-1의 9 필지	62,453 (18,872명)	
"	학 교 (상명사범대학부속국교)	중로구 홍지동 58 의 3 의 13 필지	0,302 (2,611명)	
"	학 교 (총신 대학)	관악구 사당동 200 의 1 의 3 필지	25,219 (7,662명)	
"	학 교	성동구 중곡동 176-2 의 2 필지	20,681 (6,256명)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변경	학 교 (온광여자중, 고등학교)	강남구 역삼동 114 의 13 의 1 필지	939 (284 평)	추 가
	학 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 44	8,265 (2,500 평)	해 제 기 정 19,800 ㎡ 변 경 후 1,535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5 호

주택개량채개발사업지구내도시계획
시설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채개발사업
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31 조, 동법제 12 조 및
제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74 호
(76.11.2)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 하얏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추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12. 30

서울특별시 장

가. 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삼정 제 1 지구

등급	류번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중 점	비 고
소로	4류	1	4	380	지구계북단	지구제 동단	
"	"	2	4	160	소 4-1	지구제 서단	

○ 금호 제 2 지구

소로	4류	1	4	344	지 구 계	지 구 계	
"	"	2	4	96	소 4-1	"	

○ 신 립 계 3 지 구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소로	3류	1	6	263.4	소 3-2	지 구 계	
"	"	2	6	345	소 3-1	소 3-1	
"	"	3	6	328.7	소 3-1	소 3-2	
"	"	4	6	332.7	소 3-1	소 3-2	
"	"	5	6	132.5	소 3-6	소 3-2	
"	"	6	6	157.6	소 3-2	지 구 계	
"	"	7	6	211.5	소 3-8	소 3-3	
"	"	8	6	112.6	지 구 계	소 3-4	
"	"	9	6	10.2	소 3-2	지 구 계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5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
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행정권한 위

임 위탁에 관한 규정제 25조에 따
라 이불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다.

1976.12.30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시 점	종 점
신설	소로	3		6㎡	30m	서대문구구산동 27-6	서대문구구산동 27-6
"	"	3		6㎡	25m	" 27-15	" 27-15
"	"	3		6㎡	20m	" 27-35	" 27-35
"	"	3		6㎡	90m	강남구마천동 194-11	강남구마천동 191-30

◎ 서울특별시고시제 357 호

1977 년 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7 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종

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
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12.30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회 계 별	예 산 액
일 반 회 계	151,253,448 천원
국민주택사업비특별회계	9,812,000 "
주택개량사업비특별회계	3,977,000 "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6,420,000 "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3,400,000 "
유료도로비특별회계	1,100,000 "
시민회관비특별회계	6,055,000 "
청소비특별회계	7,066,000 "
재해구호사업비특별회계	110,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26,031,000 "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10,442,000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323 호

KS 표시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6.12.30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제 585 호
- 2. 허가일자 : 1971.11.19
- 3. 제조업체명 : 태양금속공업주식회사
- 4. 대표자 : 한 은 영
- 5.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남동 340
- 6. 규격번호 : KSB 8025
- 7. 출 명 : 리어카용림

8. 처분기간 : 1976.12.30 - 77.1.30

9. 표시정지사유 : KS (한국공업규격)
막달

10. 기준미달항목 : 내식성

◎ 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공고

- 1. 건설부공고 제 7 호 (75.1.11)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 309 호 (75.12.3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된 도봉, 역촌, 경인, 신당, 청량리, 영동 1·2지구 및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1 조, 제 34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기간연기)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 2.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도서는 도시경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는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6.12.30
 서울특별시 장

사업계획 변경인가내역

지구명	변경인가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 초	변 경	
도 용	778,000 명	68. 1.23 ~ 76.12.31	68. 1.23 ~ 78.12.31	서울특별시
역 촌	1,334,005 "	67. 1.21 ~ 76.12.31	67. 1.21 ~ 78.12.31	"
경 인	2,212,373 "	68. 1.18 ~ 76.12.31	68. 1.18 ~ 78.12.31	"
신 당	65,000 "	40.10.21 ~ 76.12.31	40.10.21 ~ 78.12.31	"
청 량 리	40,410 "	40.10.21 ~ 76.12.31	40.10.21 ~ 78.12.31	"
영 동 1	5,128,000 "	68. 1.18 ~ 76.12.31	68. 1.18 ~ 78.12.31	"
영 동 2	3,934,000 "	71. 8.24 ~ 76.12.31	71. 8.24 ~ 78.12.31	"
이 수	611,120 "	72. 2.18 ~ 76.12.31	72. 2.18 ~ 77.12.31	이수조합

◎ 서울특별시 공고제 325 호

영동제 2 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

1. 건설부공고 제 79 호 (76.6.30)
 에 회거 추가시행 명령된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의 규
 정에 의한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
 하고 있다.

<p>2. 관제도시는 당사 도시정비국 구획정리 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사항은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보 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6.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계획변경내용 -</p> <p>가. 사업명 : 영등계 2지구 토지구획</p>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 사업</p> <p>나. 시행지 : 강남구 청담, 학, 신사 논현, 삼성, 대치, 압구정, 역삼, 도곡동 각 일부</p> <p>다.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라. 시행기간 : 71.8.24 - 78.12.31</p> <p>마. 시행면적 : 변경전 13,012,179㎡ (3,936,184명) 변경후 : 13,071,838㎡ (3,954,237명) 중 18,153명</p>
--	---

사 령

◎ 1976.12.13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적 급
구 본 능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 호 조	감사담당관 감사 4 계장	기획담당관	·
허 완	감사담당관 감사 1 계장	감사담당관	·
채 승 기	기획담당관 심사분석계장	(감사 4 계장)	·
정 제 택	동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동대문구 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성명	발령사항	전부서	직급
김성근	종로구	도봉구	지방행정서기보
최상기	중구	남부축지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노용배	성북구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조성소	영등포구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홍순탁	논평출장소	연료시험소	지방행정서기보
최용섭	남부축지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윤기정	동부병원	논평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이인재	도시가스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정용호	도시가스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정동식	도봉구	관악구	지방행정서보
김제수	서대문구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강병선	영등포구	송로구	지방행정서기

◎ 1976.12.15

서울특별시 부이사관 원용학
재무부 진출을 명함.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면함

지하철본부 지방공업 김인주

지방공업기감에 임함.

지하철본부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박희중
사무관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 이강훈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6.12.17

문화공보실 지방건축사 유영호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
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 1976.12.20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 최병국
주사보시보
지방공무원법 제 62 조 제 1 항 4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을 면함.
전장명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 1976.12.21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이민상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이응표
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안영승
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노석천
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 1976.12.22

종로구 지방행정 정만식
주사보
의약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김승경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4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정호진
사무관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4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
문화공보실 지방행정 이응기
주사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이정연
주사보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 함.

도 봉 구 지방행정 서 남 궁 주 화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1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 함

◎ 1976.12.24

운수 3 과 지방행정 서 김 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6.12.29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서 김 영 준
중로구보건소근무불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김 윤
중로구보건소근무불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최 우 영
중구보건소근무불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 기 민 석 기
중구보건소근무불명함

도 봉 구 지방행정 주사보 정 수 현
지방행정주사보에 투입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불명함
중로구 지방행정 서 기 이 덕 화

동대문구 보건소 근무불명함

지방행정 남 구 주사보 안 회 진

성동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동대문구 서 기 보 박 금 남

성동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중로구 서 기 고 경 환

성북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성 동 구 서 기 보 정 중 곤

성북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도 봉 구 주사보 최 광 하

도봉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성 동 구 서 기 보 조 영 은

도봉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서대문구 주사보 김 대 철

서대문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관악구 서 기 보 오 창 환

서대문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영등포구 서 기 고 재 철

마포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동대문구 서 기 보 유 전 영

마포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관악구 서 기 하 길 윤

용산구보건소근무불명함

지방행정 용 산 구 서 기 보 한 해 수

용산구보건소근무불명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보 한 유 식	도 북 구 지방토목 기사 박 종 석
영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기 주 민 오	도 북 구 지방토목 기사 유 재 준
영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중 토 구 지방행정 서기 김 진 성	성 북 구 지방토목 기사 노 진 일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용 산 구 지방행정 서기 이 강 명	은 평 지방토목 기사 박 T 돈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주사 보 윤 완	은 평 지방토목 기사 이 덕 희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북 구 지방행정 서기 홍 관 표	은 평 지방토목 기사 김 윤 규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 1976.12.30	은 평 지방토목 기사 오 의 환
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주사시보 정 원 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은 평 지방토목 기사 김 윤 규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문화공보실 지방건축 사 유 영 호	양 서 지방토목 기사 오 의 환
지방공무원법 제 1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북 구 지방토목 기사 조 정 구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사 탁 연 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p>서대문구 지방토목 이영재 사 지방토목사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종로구 지방행정 허노익 주 지방행정주사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성북구 지방토목 윤대일 사 지방토목사보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진욱 주 지방행정주사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종로 지방토목 박동식 사 지방토목사보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유윤직 주 지방행정주사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성동구 지방건축 정연문 과 지방건축과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유수련 주 지방행정주사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건축지도과 지방건축 권태정 과 지방건축과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이종훈 주 지방행정주사보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문화공보실 지방행정 이웅기 주 지방행정주사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행정 이종훈 주 지방행정주사보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도봉구 지방행정 남궁주화 서 지방행정서기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성동구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 이정연 주 지방행정주사보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중구 지방행정 이용우 주 지방행정주사보 제 69 조 제 1 항 1, 2, 3 지방공무원법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종 로 구 지방행정 이 영 화 주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도봉구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최 종 문 수 수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	---

서 울 특 별 시 상